(주)씨티케이 무선분야 시험수수료

단위 : 원

대 상 기 기	권장 시험수수료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1,500,000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에 따른 무선설비	1,500,000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1,300,000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1,300,000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1,500,000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1,500,00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1,500,000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3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1,0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1,3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1,3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1,3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1,3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1,3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1,3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1,300,000
RFID/USN용 무선기기	1,300,000
코드없는 전화기	1,300,000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1,000,000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1,000,000
해양경비 안전망용 무선설비	1,500,000

※ Note

1. 기종 또는 방식이 2이상인 복합무선기기의 경우에는 당해 기기마다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2. 2이상의 기능을 갖는 다음 기기의 경우 당해 기능시험마다 기본시험비의 50%를 추가 적용한다. (단, 1개의 제품에 2이상의 복합기능이 내장될 경우 및 다량의 모드가 적용되는 경우 시험비의 30~50%내에서 협의 적용)
   - 2이상의 입력전원을 갖는 기기(적용 예 : AC, DC, POE 등 공통전원 사용기기)
   - 운용 주파수대역이 2이상인 기기(적용 예 : 단파대용 아마추어기기)
   - 연속적 또는 단계적 출력가변기기(적용 예 : 중계기, 전력절감형기기)
   - 2이상의 전파형식을 갖는 기기(적용 예 : 제어채널을 갖는 기기)
   - 2이상의 통신방식을 갖는 기기(적용 예 : 무선LAN의 OFDM, DSSS 등)
   - 2이상의 송신 출력단을 갖는 기기(적용 예 : 무선LAN 중 다중 송신단을 갖춘 경우)
   - 2이상의 장치를 갖는 기기(적용 예 : 코드없는 전화기의 휴대장치, 고정장치 등)
   - 2이상의 송, 수신안테나를 갖는 기기(적용 예 : 양방향중계기)
   - 기타 시험성적서가 추가로 발급될 수 있는 사항
3. 제품의 무게와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소형을 기준으로 중형은 1.5배, 대형은 2배, 대형 3상은 3배의 수수료를 적용
4.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임

무선 EMC 분야 권장시험수수료

◉ 기본 수수료

단위 : 원

내용	제 품 구 분					
	배터리 (주1)	DC소형 (주2)	소형단상 (주3)	중형단상 (주4)	대형단상 (주5)	대형 3상 (주5)
시험 비용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4,500,000
시험항목 추가로 인한 비용						
음압 시험 비용	500,000	500,000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총 합계 비용	1,500,000	2,000,000	2,500,000	3,250,000	4,000,000	6,000,000

(주1) 휴대용기기 : 내장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기기로서 외부 전원이 없는 기기

(주2) DC 소형제품 중 차량용 제품은 차량 환경에서의 과도현상 및 서지 시험비용 추가

(주3) 소형 : 20kg 이하의 제품으로 1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4) 중형 : 20kg 이상 50kg 이하의 제품으로 2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5) 대형 : 50kg 이상의 제품으로 3인 이상의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 추가 수수료

A. 시험 모드가 2개 이상인 경우의 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외에 아래 계산식과 같이 시험 모드 수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하여 산정한다.

시험수수료 = 기본수수료 + 추가수수료 = 기본수수료 + {1/2(시험모드 수 – 1)× 기본수수료}

B. 전화기의 잡음전력 및 음압시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

C. 제품의 전원입력이 32A 이상인 경우 별도 협의 한다.

D. 주요 제품별 시험 모드수는 다음과 같다.

1) WLAN a,b,g,n or Bluetooth → 1 또는 2 시험 모드(주파수 Band별 시험)

2) 휴대폰 → 6 시험 모드(음성통화, BT, WAN, Camera, MP3 or MP4, USB)

3) 중계기 → 제품에 따라 선택(1~4 시험 모드)

유선설비기기 권장시험수수료

단위 : 원

대상기기		권장 시험수수료
루프스타트 방식의 기기		1,090,000
극성반전, 타이트렁크 구역외 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 방식의 기기		1,300,000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64kbps 이하)		1,100,000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2,048kbps)		1,100,000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44,736kbps)		1,100,000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1,000,000
비대칭 디지털가입자 회선 접속장치		1,700,000
초고속 디지털가입자 회선 접속장치		1,700,000
종합 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류		2,500,000
방송 공동수신 설비류	수동소자	700,000
	능동소자	2,500,00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가입자 단말장치		2,300,00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가입자 단말장치 (제한 수신시험 제외)		1,300,000
광통신용 회선 종단장치		1,300,000

※ Note

1. 카드 추가비용 : 카드회선 종류 당 25만원 추가(64kbps, 2,048kbps, 44,736kbps, 155,520kbps)
2. 2 이상의 기능을 갖는 다음 기기의 경우 당해 기능시험마다 기본시험비의 50%를 추가 적용한다.
   - 2 이상의 입력전원을 갖는 기기(적용 예 : AC, DC, POE 등 공통전원 사용기기)
3. 제품의 무게와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소형을 기준으로 중형은 1.5배,

대형은 2배, 대형 3상은 3배의 수수료를 적용

자동차 전장품 EMC (KN41) 권장시험수수료

◉ 기본 수수료

단위 : 원

시험항목	권장 시험수수료
전도성 과도전압 내성(CTI)	500,000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RI)	750,000
전자파 방사(RE)	500,000
전도성 과도 전압(CTE)	150,000

1. 복수전원(DC12V, DC24V)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 시험비의 50%를 추가 적용한다.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4호, 제3조제2항 관련) (단위: 만원)

대상 기자재		제품구분			
		소형 단상	중형 단상	대형 단상	대형 3상
1. 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 바목에 따른 기기와 동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는 제외)	가. 산업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160	250	350	500
	나. 과학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160	250	350	500
	다. 의료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160	250	350	500
	라. 가정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160	250	350	500
2.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 라목에 따른 자동차, 이륜자동차, 최고 속도가 매시 25㎞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	가. 자동차 기기류	-	-	-	-
	나.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	-	-
	다.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 (자동차 전장품)	-	-	-	-

3.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 비디오 관련 기기류 : 9㎑부터 400㎓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	가. 텔레비전수상기	AV 전용	200	250	300	400
		AV + IT	300	350	450	600
	나. 영상모니터	AV 전용	150	180	200	250
		AV + IT	250	300	400	500
	다.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200	250	300	400
대상 기자재			**제품구분**			
			소형 단상	**중형 단상**	**대형 단상**	**대형 3상**
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 ※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라. 비디오카메라		160	250	350	500
	마. 튜너		200	250	300	400
	바. 편집기		160	250	350	500
	사. 디스크플레이어		150	180	200	250
	아. 라디오수신기		150	180	200	250
	자. 앰프 및 앰프내장	1) 앰프	150	180	200	250
		2) 앰프내장형스피커				
	차. 리시버		200	250	300	400
	카. 음성기록계		160	250	350	500
	타. 음성플레이어		150	180	200	250
	파. 오디오시스템		160	250	300	400
	하. 전자악기		160	250	350	500
	거. 위성방송수신기		200	250	300	400
	너. 비디오게임기구		160	250	350	500

	더. 비디오폰		160	250	350	500
	러. TV영상프로젝터		160	250	350	500
	머. 음질조절기	1) 음질조절기	150	180	200	250
		2) 이퀄라이저				
	버. 오디오프로세서		150	180	200	250
	서. 신호변환장치(AD/DA)		150	180	200	250
	어. 음성 및 영상분배기		150	180	200	250
	저. 컴프레서 게이트		160	250	350	500
	처. 전자시계		150	200	300	450
	커. CCTV 카메라		160	250	350	500
	터. 영상전송기		160	250	350	500
	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160	250	350	500
	허. 영상기록계		160	250	350	500
	고. A/V 신호수신기		160	250	350	500
	노. 영상프로세서		150	180	200	250
	도.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160	250	350	500
	로. 턴테이블		150	180	200	250
	모.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150	180	200	250

대상 기자재			**제품구분**			
			소형 단상	**중형 단상**	**대형 단상**	**대형 3상**
	가. 전기청소기	1) 진공청소기·	130	160	200	350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 ※ 정격입력이 1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 이하인 것에 한함)	물흡입청소기	(50)	(80)	(100)	(135)
		2) 전기바닥청소기				
		3) 전기표면세척기				
		4) 스팀청소기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1) 전기건조다리미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스팀다리미				
		3) 바지 프레스기				
		4) 주름펴기				
		5) 다림질 프레스				
	다.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이하인 것)	1) 전기식기세척기	160 (80)		200 (100)	350 (135)
		2) 전기식기건조기				
	라. 주방용전열기구	1) 전기레인지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전기오븐기기				
		3) 전기거치식그릴				
		4) 전기호브				
		5) 전기곤로				
		6) 전기가열기				
		7) 전기토스터				
		8) 전기프라이팬				
		9) 전기휴대형그릴				
		10) 전기고기구이기				
		11) 와플기기				
		12) 핫플레이트				

	마.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1) 전기세탁기 (의류, 옷감 세탁용으로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이하인 것)	160 (80)	200 (100)	350 (135)
		2) 전기탈수기 (드럼속도 50m/s 이하인 것)			

대상 기자재			제품구분			
			소형 단상	중형 단상	대형 단상	대형 3상
	바. 모발관리기	1) 모발건조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전기머리인두				
		3) 모발말개				
	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1) 전기보온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전기주온기				
		3) 전기온장고				
	아. 주방용전동기기	1) 주서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주서믹서기				
		3) 후드믹서				
		4) 전기녹즙기				
		5) 크림거품기				
		6) 계란반죽기				
		7) 혼합기				
		8) 버터제조기				
		9) 압즙기				

		10) 슬라이스기				
		11) 전기칼갈이				
		12) 전기깡통따개				
		13) 전기칼				
		14) 커피분쇄기				
		15) 빙삭기				
		16) 전기고기갈개				
		17) 전기국수제조기				
		18) 전기육절기				
		19) 전기골절기				
		20) 기타 주방용전동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이하인 것에 한함)				

대상 기자재			**제품구분**			
			소형 단상	**중형 단상**	**대형 단상**	**대형 3상**
	자. 전기액체가열기기	1) 전기밥솥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전기보온밥솥				
		3) 전기주전자				
		4) 전기냄비				
		5) 전기물끓이기				
		6) 전기약탕기				
		7) 커피메이커				
		8) 전기스팀쿠커				
		9) 달걀조리기				

		10) 우유가열기				
		11) 젖병가열기				
		12) 요구르트제조기				
		13)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1) 전기방석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전기요				
		3) 전기매트				
		4) 전기카펫				
		5) 전기장판				
		6) 전기침대				
	카. 전기찜질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타. 발 보온기	1) 발보온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전기손난로				
	파. 전기온수기	1) 전기온수기 (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14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순간온수기				
	하. 전기냉장·냉동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이하인 것)	1) 전기냉장·냉동기기	14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제빙기				
		3) 아이스크림프리저				
		4) 전기냉수기				

대상 기자재	제품구분

			소형 단상	중형 단상	대형 단상	대형 3상
	거. 전자레인지 (300㎒~30㎓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		-	-	-	-
	너. 가정용 전동재봉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더. 전기충전기 (출력전압이 50V 이하인 것)		150	200	300	450
	러. 전기건조기	1) 회전형 전기건조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손건조기				
		3) 전기건조기				
	머. 전열기구	1) 전기스토브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전열보드				
		3) 전기라디에이터				
		4) 전기온풍기				
		5) 축열식전기난방기				
	버. 전기맛사지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서. 냉방기 및 제습기 (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	1) 냉방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제습기				

	어. 유체펌프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이고 정격입력이 1.5㎾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1) 유체펌프	14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전기온수펌프				

대상 기자재			제품구분			
			소형 단상	중형 단상	대형 단상	대형 3상
	저. 전기가열기기	1) 납땜인두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납땜제거인두				
		3) 권총형납땜기				
		4) 열가속성도관용접기				
		5) 필름접착기				
		6) 플라스틱절단기				
		7) 페인트제거기				
		8) 가열총				
		9) 전기조각기				
	처. 사우나기기	1) 전기스팀사우나기기	160 (80)		200 (100)	350 (135)
		2) 전기사우나기기				
		3)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130	160	200	350

		4)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50)	(80)	(100)	(135)
	커.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1)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3) 관상어용 기포 발생기				
		4) 관상용 전기어항				
	터. 기포발생기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퍼. 전격살충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허. 전기욕조	1) 소용돌이 욕조 (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 발생기 포함)	160 (80)		200 (100)	350 (135)
		2) 반신(전신)욕조				
		3) 발욕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대상 기자재		제품구분			
		소형 단상	중형 단상	대형 단상	대형 3상
	고. 공기청정기 (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노. 자동판매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도. 팬, 레인지후드 (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	1)선풍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송풍기				
		3) 환풍기				
		4) 레인지후드				
		5) 전기냉풍기				
	로. 화장실용 전기기기	1)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14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전기변좌				
		3) 오물흡입기				
	모. 가습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보. 전기분무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소. 전기소독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오.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중 음식물 분쇄기의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조. 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1) 물수건포장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물수건마는기기				
	초. 과일껍질깍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코. 감자탈피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토. 전기정미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포. 전기빵자르개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호. 전기용해기	1) 왁스용해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쵸코렛용해기				
		3) 파라핀용해기				
	구. 애완동물 목욕기		140 (50)	160 (80)	200 (100)	350 (135)

대상 기자재			제품구분			
			소형 단상	중형 단상	대형 단상	대형 3상
	누. 이미용기	1) 전기머리손질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두피모발기				
		3) 샴푸기기				
		4) 모발가습기				
		5) 손톱정리기				
		6) 전기면도기				
		7) 전기이발기				
		8) 안면사우나기				
	두. 전기주류숙성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루. 전기시계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무.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1) 적외선방사 피부 관리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자외선방사 피부 관리기				
	부.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3) 전기이발용의자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4) 전동침대				
		5) 전기온열의자				

	수. 컴프레서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우. 전기온수매트	1) 전기보일러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전기온수매트 및 전기온수침대				
	주. 구강청결기	3) 전동칫솔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4) 구강세척기				
	추. 전기분수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쿠. 투영기	1) 슬라이드 투영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필름스트립 투영기				
		3) OHP				
		4) 필름 투영기				
	투. 해충퇴치기	1) 해충퇴치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전기포충기				
	푸. 전기집진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후. 착유기		130	160	200	350

대상 기자재			**제품구분**			
			소형 단상	**중형 단상**	**대형 단상**	**대형 3상**
	그. 서비스기기	1) 전기광택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수하물보관기				
		3) 지폐교환기				
		4) 동전교환기				
	느. 전기에어커튼		130	160	200	350

			(50)	(80)	(100)	(135)
	드.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르. 폐열 회수 환기장치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므. 게임기구	1) 레이저사격기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운전시뮬레이션 게임기구				
		3) 인형뽑기				
		4) 다트판				
		5) 농구게임기				
		6) 기타 게임기기				
	브. 전동형 롤스크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스. 전기훈증기	1) 전기훈증살충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전기방향확산기				
	으. 수도동결방지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즈. 보플제거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츠. 산소이온발생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크. 전기정수기	1) 전기정수기	14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전기이온수기				
	트. 초음파세척기	1) 초음파세척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과일야채세척기				
	프.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130	160	200	350

		(50)	(80)	(100)	(135)
	ㅎ. 전기작동도어록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대상 기자재			제품구분			
			소형 단상	중형 단상	대형 단상	대형 3상
	니. 전동공구 (정격입력이 1.5㎾ 이하인 것에 한함)	1) 전기드릴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전기드라이버				
		3) 전기그라인다				
		4) 포리셔				
		5) 전기샌더				
		6) 전기원형톱				
		7) 전기햄머				
		8) 전기금속가위				
		9) 전기테이퍼				
		10) 전기왕복톱				
		11) 전기진동기				
		12) 전기체인톱				
		13) 전기대패				
		14) 전기잔디깍기				
		15) 전기못총				
		16)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17)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5.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 9kHz부터 400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가. 일반 조명기구	1) 형광등기구	150 (50)	200 (80)	300 (100)	450 (135)
		2) PLS조명기구				
		3)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4) LED등기구				
		5) 할로겐등기구 (150W 이하의 것)				

		6) 고압방전등기구 (150W 이하의 것)				
		7) 투광조명기구 (150W 이하의 것)				

대상 기자재			제품구분			
			소형 단상	중형 단상	대형 단상	대형 3상
	나.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1)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의 것)	150 (50)	200 (80)	300 (100)	450 (135)
		2)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의 것)				
		3) 네온변압기				
		4)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 (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다. 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 포함)		150 (50)	200 (80)	300 (100)	450 (135)
	라. 기타 조명기구	1)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	150 (50)	200 (80)	300 (100)	450 (135)
		2) 충전식휴대전등				
		3) LED 모듈(램프)				
	가. 컴퓨터류		160	250	350	500

6. 정보. 사무 기기류 :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기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기기	나. 컴퓨터 주변기기류	1) 입력장치류 (스캐너,키보드 등)	160	250	350	500
		2) 출력장치류 (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등)				
		3) 외장형 저장장치류 (외장형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등)				
		4) 콘트롤러류				
		5)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류				
	다.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1) 보드류	160	250	350	500
		2) 저장장치류				

대상 기자재			**제품구분**			
			소형 단상	**중형 단상**	**대형 단상**	**대형 3상**
		3) 전원공급기 및 직류전원장치 (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 포함)	150	200	300	450
		4) 콘트롤러류	160	250	350	500
		5) 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160	250	350	500

	라. 사무기기류	1) 무정전 전원장치 (정격용량이 10㎸A 이하인 것)	160	250	350	500
		2) 코팅기				
		3) 지폐계수기				
		4) 전자저울				
		5) 금전등록기				
		6) 어학실습기				
		7) 문서세단기				
		8) 천공기				
		9) 재단기				
		10) 제본기				
		11) 전자칠판 및 보드				
		12) 동전계수기				
		13) 전동타자기				
		14) 전기소자기				
		15) 교통카드충전기				
		16) 번호표발행기				
	마. 기타 정보·사무 기기류		160	250	350	500

대상 기자재	제품구분			
	소형 단상	중형 단상	대형 단상	대형 3상
7. 디지털 장치류 : 제2조제7호에 따른 기기	160	250	350	500

8. 전선로에 주파수가 9㎑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 설비의 기기 (전파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는 제외)			160	250	350	500
9.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가정용무선전력충전기)			200	300	400	500
10.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	1) 전자식스위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		160	250	350	500
	2) 리모트콘트롤스위치					
	3) 시간지연스위치					
	4) 조광기					
	5) 전자개폐기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					
	6) 온도조절기(전자식에 한함)					
	7) 타이머 및 타이머스위치 (전자식에 한함)					
11.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케이블릴		-	-	-	-
12.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누전차단기(전자식에 한함)		160	250	350	500
13. 절연변압기 ※ 정격용량 5㎸A 이하인 것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은 제외	가. 변압기 및 전압 조정기	1) 전압조정기	130 (50)	160 (80)	200 (100)	350 (135)
		2) 가정용소형변압기				
		3) 교류어댑터				
	나. 고주파웰더		-	-	-	-
	다. 전기용접기	1) 전기용접기	-	-	-	-
		2) 총형아크접착기				

대상 기자재			**제품구분**			
			소형 단상	**중형 단상**	**대형 단상**	**대형 3상**
14. 단말기기류	가. 전화기(헤드셋 전화기 포함)		160	250	350	500
	나. 다기능 전화기 (시계, 라디오, TV 또는 도어폰 등 전화기능과 관계 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160	250	350	500
	다.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커넥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 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160	250	350	500
	라. 팩시밀리기기 (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160	250	350	500
	마. 영상전화기		160	250	350	500
	바.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홈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		160	250	350	500
	사.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160	250	350	500
	아. 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카드식 포함)		160	250	350	500
	자. 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카드식 포함)		160	250	350	500

	차. 팩시밀리 모뎀(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160	250	350	500
	카. 근거리데이터채널모뎀(원격통신용, LADC)	160	250	350	500
	타.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160	250	350	500
	파.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160	250	350	500
	하.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160	250	350	500
	거.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160	250	350	500
	너. 코덱	160	250	350	500
	더. 다기능보조기기(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방식 기기)	160	250	350	500
	러.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보호기기	160	250	350	500
	머. 원격제어기기	160	250	350	500
	버.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160	250	350	500
	서. 회선장애 감시기기	160	250	350	500
	어. 디지털가입자회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ADSL, VDSL 모뎀 등)	160	250	350	500
	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한 인터넷전화기, 라우터 등)	160	250	350	500
	처.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케이블모뎀 등)	160	250	350	500
	커.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160	250	350	500
대상 기자재		**제품구분**			
		소형 단상	**중형 단상**	**대형 단상**	**대형 3상**

15. 승강기(「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검사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	가. 전기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	-	-	-
	나.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다.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및 구성품류				
	라. 기타 승강기 및 구성품류				
16. 그밖에 제1호부터 제15호에 준하는 기기류		160	250	350	500

※ 비 고

o 제7호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나.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다.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 손목시계

라.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마. 카메라 렌즈

바. 배터리

사.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4호, 제3조제2항 관련) (단위: 만원)

대상 기자재			제품구분			
			소형 단상	중형 단상	대형 단상	대형 3상
1. 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가. 시험·측정용 계측설비류 (오실로스코프, 전계강도측정기, 스펙트럼분석기, 네트웍분석기 등으로 제2조제1항제6호의 정보기기 정의를 포함하는 것에 한함)		180	250	350	500
	나. 휴대용 자동차진단기		180	250	350	500
2.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산업용"이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 공정 및 빌딩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가. 산업용컴퓨터		180	250	350	500
	나. 산업용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산업용 설비		180	250	350	500
	다. 기타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180	250	350	500
3.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류	가. 전자식 운행기록계		180	250	350	500
	나. 주차차단 제어장치		180	250	350	500
4. 망 위해 영향이 적은 기자재류	가. 유선통신단말 및 방송공동수신설비	1) 접속 커넥터	-	-	-	-
		2) 분기기	-	-	-	-
		3) 분배기	-	-	-	-
		4) 동축케이블	-	-	-	-
		5) 보호기	-	-	-	-

		6) 가입자보호기(CATV)	-	-	-	-
		8) 광분배기	-	-	-	-
		9) 광케이블	-	-	-	-
		10) 직렬단자	-	-	-	-
	나. 유선통신시스템 부속물류	1) 응답 서비스에 사용 되는 집선장치	-	-	-	-
		2)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	-	-	-	-
	다. 단말기기류	1) 공중전화기	-	-	-	-
		2) ISDN 망종단 기기 (NTE)	-	-	-	-
		3) ISDN 단말기기 (ISDN 전화기, 터미널 어댑터, 인터페이스 카드 등)	-	-	-	-
		4) ISDN 다기능기기 (ISDN 영상기기, ISDN 복합단말기기, G4 팩시밀리 ISDN 라우터 등)	-	-	-	-
5. 전기철도기기류 :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전기철도 차량 내 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기, 그 밖의 고정전원시설			-	-	-	-
6.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	-	-	-
7. 기타 다음 각 호의 기자재 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기자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나. 별표 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기자재중 단서규정(정격입력, 출력전압, 정격용량, 소비전력, 정격전류 등) 이외의 기자재 및 특수조건의 기자재			** 해당제품군 수수료 적용			

7. 기타 다음 각 호의 기자재 다. 별표 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60	-	-	-
※ 비고 o 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 시험규격은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또는 '형광등 등 및 조명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을 적용한다.				

※ 비고

가. 시험해당 없는 단순변경 신청시 (타 시험소 기 등록건 포함) : 100,000 (원)

나. 기술기준변경 (시험진행) 신청시 : 해당 시험 수수료 + 등록세 (55,000 원)

▣ 면허세 (2014.1.1. 시행)

참고 1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액별 과세대상 및 세율 변동

구분	인구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군	
	현행	개정 (50%↑)	현행	개정 (50%↑)	현행	개정 (50%↑)
제1종	45,000	67,500	30,000	45,000	18,000	27,000
제2종	36,000	54,000	22,500	34,000	12,000	18,000
제3종	27,000	40,500	15,000	22,500	8,000	12,000
제4종	18,000	27,000	10,000	15,000	6,000	9,000
제5종	12,000	18,000	5,000	7,500	3,000	4,500

참고 2 인구 50만 이상 도시 (22개 도시)

특별시	광역시	기타 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김해 고양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화성